LEEPS HANYANG | 한양립스 에듀포레 입주자 모집공고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062-946-5552

주택유형	해당지역	기타지역	규제지역여부
민영	광주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2024.01.17.전달터 계속 거주)	광주광역시 1년 미만 계속 거주자 및 전라남도 거주자	비규제지역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없음	6개월	없음	미적용	민간택지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5.01.17.(금)	2025.02.03.(월)	2025.02.04.(화)	2025.02.05.(수)	2025.02.11.(화)	2025.02.12.(수)~2025.02.15.(토)	2025.02.24.(월)~2025.02.26.(수)

Ⅰ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짐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해져 있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부동산원은 해당 안내 또는 답변 내용에 대하여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약 접수 및 당첨자 발표 시 시간 지연 등 예기치 못한 사유로 인해 접수 및 당첨자 발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4.12.18.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적용을 받으며 이 공고 내용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만 7세 미만 자녀 보유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한하여 당첨된 경우 시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시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른 게재상황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분류되어 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며,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에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자격요건	6개월 이상,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 충족			1순위(6개월 이상,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 충족)				가입
세대주 요건	-		-		필요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	적용		-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청각장애인 소유자(도시재생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1순위: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2순위: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자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기재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저축일(일)등을 통한 모든 주택청약홈 및 나눔홈페이지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해 본하여 인간만신청이기능하며, 2건이상중복신청시 모두 무효처리되는 청약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입주자저축이 무효처리되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2번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및 또는 일반공급 각 중복청약시 모두 무효처리)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모집 시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하여야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본인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33조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라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되어야 합니다.
  (예) 부 · 모 장인 · 장모 시부 · 시모 조부 · 조모 외조부 · 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되어야 합니다.
  (예) 아들 · 딸 사위 · 며느리 손자 · 손녀 외손자 · 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되어야 합니다.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 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함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3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여 1.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 참조)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735, 제806호, 2018.12.11. 시행)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다)
'분양권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봅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분양권등 포함) 소유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나, 만6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배우자 포함) 중 한 명이라도 주택(분양권등을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둘 다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유형	당첨자 선정	예비입주자 선정	동호수 결정
특별공급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순으로 선정	특별공급 일반공급 구분 없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일반공급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순으로 선정(동점 시 추첨)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자 및 일반공급 청약자로 이월되어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청약자 및 청약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노원 청약소 본인 당첨자 및 입주권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노원 청약소 본인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019.12.06.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세대수는 청약신청자 수가 해당 주택형 일반공급 세대수의 미달되어 기준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발생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제 참가 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된 예비입주자는 계약하여야 신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 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 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당첨 및 예비입주자 지위를 상실하며 시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 서의 지위를 상실하며 시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시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른 게재상황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며,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에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자격요건	6개월 이상,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 충족			1순위(6개월 이상,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 충족)				가입
세대주 요건	-		-		필요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	적용		-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청각장애인 소유자(도시재생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1순위: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2순위: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자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기재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저축일(일)등을 통해 모든 주택청약홈 및 나눔홈페이지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해 본하여 인간만신청이기능하며, 2건이상중복신청시 모두 무효처리되는 청약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입주자저축이 무효처리되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2번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및 또는 일반공급 각 중복청약시 모두 무효처리)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모집 시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하여야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본인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2항 및 제33조 제4항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라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되어야 합니다.
  (예) 부 · 모 장인 · 장모 시부 · 시모 조부 · 조모 외조부 · 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되어야 합니다.
  (예) 아들 · 딸 사위 · 며느리 손자 · 손녀 외손자 · 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되어야 합니다.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 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함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3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여 1.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 참조)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735, 제806호, 2018.12.11. 시행)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다)
'분양권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봅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분양권등 포함) 소유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나, 만6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배우자 포함) 중 한 명이라도 주택(분양권등을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둘 다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유형	당첨자 선정	예비입주자 선정	동호수 결정
특별공급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순으로 선정(동점 시 추첨)	특별공급 일반공급 구분 없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일반공급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순으로 선정(동점 시 추첨)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자 및 일반공급 청약자로 이월되어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청약자 및 청약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노원 청약소 본인 당첨자 및 입주권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노원 청약소 본인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019.12.06.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세대수는 청약신청자 수가 해당 주택형 일반공급 세대수의 미달되어 기준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발생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제 참가 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된 예비입주자는 계약하여야 신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 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 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당첨 및 예비입주자 지위를 상실하며 시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 및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며,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에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자격요건	6개월 이상,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 충족			1순위(6개월 이상,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 충족)				가입
세대주 요건	-		-		필요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	적용		-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청각장애인 소유자(도시재생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1순위: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2순위: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자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기재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저축일(일)등을 통해 모든 주택청약홈 및 나눔홈페이지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해 본하여 인간만신청이기능하며, 2건이상중복신청시 모두 무효처리되는 청약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입주자저축이 무효처리되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2번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및 또는 일반공급 각 중복청약시 모두 무효처리)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모집 시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하여야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본인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2항 및 제33조 제4항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라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되어야 합니다.
  (예) 부 · 모 장인 · 장모 시부 · 시모 조부 · 조모 외조부 · 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되어야 합니다.
  (예) 아들 · 딸 사위 · 며느리 손자 · 손녀 외손자 · 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되어야 합니다.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 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함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3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여 1.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 참조)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735, 제806호, 2018.12.11. 시행)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다)
'분양권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봅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분양권등 포함) 소유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나, 만6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배우자 포함) 중 한 명이라도 주택(분양권등을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둘 다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유형	당첨자 선정	예비입주자 선정	동호수 결정
특별공급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순으로 선정	특별공급 일반공급 구분 없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일반공급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순으로 선정(동점 시 추첨)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자 및 일반공급 청약자로 이월되어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청약자 및 청약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노원 청약소 본인 당첨자 및 입주권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노원 청약소 본인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019.12.06.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세대수는 청약신청자 수가 해당 주택형 일반공급 세대수의 미달되어 기준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발생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제 참가 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된 예비입주자는 계약하여야 신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 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 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당첨 및 예비입주자 지위를 상실하며 시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 및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며,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에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자격요건	6개월 이상,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 충족			1순위(6개월 이상,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 충족)				가입
세대주 요건	-		-		필요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	적용		-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청각장애인 소유자(도시재생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1순위: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2순위: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자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기재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저축일(일)등을 통해 모든 주택청약홈 및 나눔홈페이지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해 본하여 인간만신청이기능하며, 2건이상중복신청시 모두 무효처리되는 청약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입주자저축이 무효처리되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2번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및 또는 일반공급 각 중복청약시 모두 무효처리)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모집 시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하여야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본인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2항 및 제33조 제4항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라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되어야 합니다.
  (예) 부 · 모 장인 · 장모 시부 · 시모 조부 · 조모 외조부 · 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되어야 합니다.
  (예) 아들 · 딸 사위 · 며느리 손자 · 손녀 외손자 · 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되어야 합니다.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 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함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3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여 1.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 참조)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735, 제806호, 2018.12.11. 시행)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